
2018년도 상반기 자체감사 운영 방향 및 사례



2019. 2.

서 울 대 학 교
[상 근 감 사 실]

2018년도 상반기 자체감사 운영 방향

□ 감사 운영 방향

- 본부 및 대학주관 부속·연구시설 감사 실시
- 학내 요청을 기반으로 한 특정감사 실시

□ 감사 실시 기관 및 조치사항

○ 실시 기관

-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: 본부 부속시설 등 4개 기관(2018. 3. 12. ~ 2018. 7. 20.)

○ 감사결과 조치사항

- 신분상 조치 : 6건 5명
- 시정 : 재정 3건(2,476천 원), 행정 1건
- 경고·주의(기관) : 8건 4개 기관
- 통보 : 8건

□ 감사 주요 내용 및 촉구 사항

○ 규정 미 준수 및 부적정한 규정 정비 촉구

- 본부 및 대학주관 부속시설의 「서울대학교 대학(원) 및 부속시설 업무처리 규정」 준수 촉구 및 소관 부속시설 관리 철저 요청
- 비학위과정(특별강좌) 운영 관련 지침 미비로 비학위과정 관리 부실
- 상위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자체 규정 정비 및 규정의 자의적 해석·적용 금지

○ 예산 집행의 타당성 및 투명성 제고

- 사업의 실현가능성·기대효과·사후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예산 낭비 방지 촉구
-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예산 방만 운영 금지
- 수입대체경비 편성 및 집행 투명성 제고 촉구
- 인건비 예산을 초과하는 자체직원 임금 인상 또는 추가 고용 금지
- 업무 용도로 개인카드 사용 금지 및 회계 증빙서류 구비 철저 촉구

○ 기타

- 휴관 시, 직원의 임의 휴무 금지 및 복무관리 철저
- 각종 소득관련 신고 철저
- 교직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촉구

□ 감사 전문성 제고

○ 감사인 전문성 제고

- 감사전문위원 위촉 및 감사처분위원회 개최로 감사 처분의 정당성 제고
- 감사교육원 사이버 교육 및 한국감사협회 감사전문교육 이수 등 감사인 직무 역량 강화
- 유관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다양한 감사 사례 확보 및 감사 전문성 강화

2018년 상반기 자체감사 주요 감사사례

□ 부속시설 업무처리 규정 미 준수

부속시설 및 관련시설의 장이 별표1의2의 업무*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처·국장과 사전에 협의하고,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속시설의 장은 연간 운영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 자체직원의 임면, 공사 5,000만 원, 제조구매용역 3,000만 원 기타 1,000만 원 초과한 사업계획 등

【서울대학교 대학(원) 및 부속시설 업무처리 규정】

- 협의 또는 총장 승인 대상 업무에 대한 본부 소관 부서와의 협의(승인) 촉구
- 부속시설의 운영계획 및 전년도 실적 등 주요 운영방향 총장 보고 촉구

□ 예산·회계업무 관리 및 집행 부적정

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상계하거나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고, 예산은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, 회계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.

각 기관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전부 법인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정부 구매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【서울대학교 재무·회계 규정,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, 2018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】

- 기관의 예산 및 공간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사업계획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 금지
- 수입대체경비 편성 철저 및 수입금 직접 사용, 비 법인회계 세입 금지
- 회계처리 시 적정한 증빙자료 구비 및 업무용도로 개인카드 사용 금지

□ 제 규정 관리 및 정비 부적정

업무소관부서의 장은 제 규정의 입법배경·취지 및 운영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규정을 해석하여야 하고, 제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주요 부분이 수정·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비하여야 한다.

【서울대학교 제 규정 관리 규정】

-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의 임의적 생략 및 자의적 규정 해석 금지
- 상위 법령에 배치되는 자체 규정 제정 금지
-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여 학내 비학위과정 관리 철저 촉구

□ 교직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촉구

교직원은 출장비,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.

교직원은 제1항의 입찰,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,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
【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,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】

-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
- 계약(이행) 시,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금지
-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직무관련 상급자에게 금품 제공 금지